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543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용태・진종오・박준태
서천호・우재준・김은혜
신성범・이성권・조은희
정동만・천하람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역・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,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.

지역・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,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「기부금품의 모집・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의학교육・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・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5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 등) ①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할 수 있다.

②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·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·접수의 범위·절차·사용방법 및 제한,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9조의2(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 등) ①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할 수 있다. ②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·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·접수의 범위·절차·사용방법 및 제한,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